의 안 번 호	5099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제출 연월일	2026. 9. 1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099

제출연월일 : 2026. 9. 18.

제출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1. 개정이유

교육 현장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AI·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미래 교육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이번 조직개편 내용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교육국장의 업무에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건강과 위기학생에 관한 사항을 추가(안 제5조)

○ 정책국 명칭을 기획안전국으로 변경하고 기획안전국장의 업무에 의회 및 교육협력 관련업무와 미래기획관 업무 대부분을 이관하는 사항(안 제6조)

○ 연수기능과 안전체험교육 연계를 위해 안전체험교육원을 폐지하고 교육원 소관업무로 기능을 이관하는 사항(안 제8조, 제10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간 : 2026. 8. 5.(수)~8. 17.(월) [12일 간]
- 의견 : 19건
- 결과 : 수용 3건, 수용불가 16건(붙임4 참고)

2) 부서협의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조직예산과-5385, 2026. 8. 4.)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비대상)
-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미래기획과-5623, 2026. 8. 4.)

4. 붙임 :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신구대조표, 관계법령

세종특별자치시 조례 제 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국, 정책국”을 “기획안전국, 행정국”으로 한다.

제5조제41호 및 제4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3호 및 제4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3.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44. 학생건강과 위기학생에 관한 사항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6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정책국)”을 “(기획안전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11. 의회 및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12. 교육정책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3. AI업무혁신에 관한 사항

14.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종전의 제6조) 제1항제25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안전교육 및 역량 강화

제10조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학생의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체험활동

11. 교직원 및 학부모의 안전체험교육 연수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8조제7호 중 “Wee센터·학교폭력제로센터”를 “학교폭력제로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을 둔다.	제4조(국의 설치) ---------- ---------- ---------- 기획안전국, 행정국--.
제5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40. (생 략) 41. 과학·영재·수학·융합·발명교육과 스마트교육·정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2.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제5조(교육국) ---------- ----------. 1. ~ 40.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43.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44. 학생건강과 위기학생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국) ①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 22. (생 략) 23.·24. 삭 제 25. 급식 관리 26. 삭 제 27. ~ 30. (생 략)	제7조(행정국) ① ---------- ----------. 1. ~ 22. (현행과 같음) <삭 제> 27. ~ 30. (현행과 같음)

제7조(정책국)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기획안전국) 기획안전국장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신 설>	11. 의회 및 교육협력에 관한 사항
<신 설>	12. 교육정책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신 설>	13. AI업무혁신에 관한 사항
<신 설>	14. 급식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유아교육법」 제6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두고, 그 설치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설치) ①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안전교육 및 역량 강화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제10조(업무)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삭 제	
<신 설>	10. 학생의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체험활동
<신 설>	11. 교직원 및 학부모의 안전체험교육 연수
10. (생 략)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2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및 안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이하 “안전체험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삭 제>
② 안전체험교육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내창천로 54에 둔다.	
제21조(원장) 안전체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삭 제>
제22조(업무) 안전체험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삭 제>
1. 학생의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체험활동	
2. 교직원 및 학부모의 안전체험교육 연수	

3. 안전교육자료 제작·보급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8조(업무) 학교지원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 6. (생 략) 7. Wee센터·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 10. (생 략)	제28조(업무) ----------. 1. ~ 6. (현행과 같음) 7. 학교폭력제로센터 ---------- 8. ~ 10. (현행과 같음)

[붙임 2]

관 계 법 령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기구와 정원의 관리목표) ① 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 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정원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은 서로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3.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도 조정하여야 한다.
4.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하기에 쉽고 적합하도록 조직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구 설치 시 고려사항) ① 교육감은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4. 학교와 교육 수요자 등에 대한 현장지원을 중심으로 고려한 효율성
5. 통솔 범위, 기능의 중복 여부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 가능성

② 교육감은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행정협의회 등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기구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되는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조직과 공무원의 직급은 시·도 교육청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직속기관 또는 교육지원청에 법 제35조에 따른 교육장의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비용 발생과 관련된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청 사무 조정과 직속기관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이므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의안이 아님

4. 작성자 : 정책국 조직예산과장 구중필

[붙임 4]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검토 결과

□ 입법예고 제출의견 및 검토의견

○ 장남들 보전 시민모임(1차~3차)

제출의견			검토의견
관련 조항	의견 내용	의견 이유	
예고기간 · 주요내용	**법정 예고기간 준수 요구**	- 의회 제출일정은 기간 단축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제5조 제42호(생태전환교육관련) 삭제 내용이 공고문 '주요내용' 에서 누락	**수용불가** - 「행정절차법」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공고기간 단축함
제5조 42호	**삭제 철회**	- 조문의 삭제는 책임 주체가 없는 사무가 되어 사실상 중단됨 - 상위법령과 국가 교육과정과의 역행 - 유엔대학으로부터 인증된 RCE 인증의 유지에 악영향	**수용불가** - 업무분장, 기관설치 등은 기관 내부의 운영에 관한 결정사항임 - 조직·인력·예산 유지 계획 공개는 이번 기구조례와 연관성이 적음
제6조 (기획안전국)	**기획안전국 분장사무로 명시**	- 미래기획관 업무 대부분을 이관한다고 밝혔으나 지속가능발전교육·생태전환교육 미포함 - 담당 전담 조직, 인력, 예산유지 계획 공개	
제8조·제10조 제20조~제22조	**안전체험교육원 체험 인프라 유지계획 공개**	**폐지 전 아래사항 공개 요구** - 조치원읍 소재 전용 시설 존치여부 및 활용계획 - 안전체험 전담 인력 규모 및 개편후 유지 규모 - 3년간 연간 체험 학생수 및 개편후 수용 가능 정원	**수용불가** - 기존 체험시설 등은 유지할 예정임
제5조 42호, 제6조	**이관처 명시**	- 지속가능발전교육·생태전환교육이 이관되는 부서관련 조항이 없음 - 담당관은 국의 하부조직이므로 이관받는 국에 이관업무 명시 필요	**수용불가** - 업무분장, 기관설치 등은 기관 내부의 운영에 관한 결정사항임 - 담당관은 국의 하부조직이 아니므로 규칙에 반영할 예정
-	**담당관 신설 규칙 개정**	- 담당관 신설을 담은 규칙 개정안을 본조례와 같이 입법예고	**수용불가** - 조례개정이후 규칙에 반영할 예정
-	**이관에 따른 인력·인력·예산 및 RCE 운영 자료 공개**	**아래사항 공개 요구** - 신설담당관 정원 및 이관업무 전담인력 수 - 2027년도 관련 예산 계획 - 세종RCE 운영 소관부서 및 인증유지 계획 - 개편관련 유엔대학 또는 RCE네트워크 협의 경과	**수용불가** - 규칙 개정시 검토할 예정 - 그 외사항은 사업부서 검토 필요

제출의견			검토의견
관련 조항	의견 내용	의견 이유	
예고기간 · 주요내용	**이관계획 명시 및 법적예고기간 준수**	- 제5조 42호 삭제 사실 및 이관계획 '주요업무' 명기 - 법정예고기간(20일 이상) 준수 후 입법예고 재실시	**수용불가** - 「행정절차법」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공고기간 단축함
-	**미래기획관 폐지 관련 조례정비 누락**	- 미래기획관 폐지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다른 조례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음	**수용불가** -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다른조례는 향후 일괄 개정할 예정임
제5조 4호	**시행규칙상 생태전환교육 반영**	- 지속발전교육 및 생태전환교육 관련된 사항을 사무분장에 정비	**수용불가** - 담당관의 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세종RCE 운영 근거**	- RCE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포함	**수용불가** - 담당관의 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신설 담당관 조직·인력·예산**	- 신설담당관 조직·인력·예산 계획 공개 및 조례안 심의전 시행규칙 개정안 공개 요구	**수용불가** - 담당관 사무는 법령 체계상 조례개정 이후 규칙에 반영할 예정
제5조 제42호	**법정 예고기간 준수 요구**	- 제5조 42호 삭제 사실과 취지를 '주요내용'에 명시하고 법정예고기간(20일) 준수	**수용불가** - 「행정절차법」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당한 사유로 공고기간 단축함

○ 학교안전과

제출의견			검토의견
관련 조항	의견 내용	의견 이유	
제5조(교육국)	**학생건강팀 교육국 이관**	- 학생 마음건강 지원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생건강팀을 위(Wee)프로젝트·학생생활교육 등 학생지원 기능이 있는 교육국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제안 - 학생 건강과 위(Wee)프로젝트를 연계하여 학생 마음건강 원스톱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수용** - 사회정서교육과정, 위(Wee)프로젝트 등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 학교정책과

제출의견			검토의견
관련 조항	의견 내용	의견 이유	
-	**체육인성예술과 명칭 변경**	- 인성을 앞에 배치할 경우 학생의 마음, 관계, 정서적 성장에 기반하여 체육과 예술을 함께 아우르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 지원부서의 이미지가 명확해짐	**수용불가** - 직관성·기능적 측면에서 현재 추진방안이 적절
-	**생활인성팀 팀 분리**	- 생활인성팀에 Wee센터 업무 이관(예정)으로 1명 팀장의 업무전문성 및 정확성 결여가 예상되므로 2개팀으로 분리하는 방안 제안	**수용불가** - 소관업무의 유사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 한개팀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
-	**화해중재부의 Wee센터를 본청으로 이관**	- 화해중재부에서 Wee센터를 분리하고 학교 Wee클래스 업무와 통합·운영 필요 - Wee클래스-Wee센터-지역사회연계로 이어지는 통합지원 필요	수용 - 사회정서교육과정, 위(Wee)프로젝트 등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 박○○

제출의견			검토의견
관련 조항	의견 내용	의견 이유	
-	**부서 재배치**	- 기획안전국 교육안전과 학생건강팀을 교육국 체육인성예술과 학생건강팀으로 재배치 - 학생건강팀과 생활교육팀의 부서 이원화로 인한 분절된 교육과정을 같은과에서 통합하여 운영 필요	수용 - 사회정서교육과정, 위(Wee)프로젝트 등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 세종시교육청ESD민관학거버넌스

제출의견			검토의견
관련 조항	의견 내용	의견 이유	
제5조 제42호	**기존 정책 연속성 유지 요청**	- 시행규칙 사무분장에 ESD·생태전환교육·세종RCE 업무 명확화 - 사업 지속을 위한 적정 예산 및 담당인력 확보 - 신설부터 내 정책조율 및 민관학 거버넌스와 사전소통 강화	**수용불가** - 이번 기구조례 개정과 연관성이 적음,규칙 개정에 일부 반영 예정임 - 조례나 규칙에는 개별사업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며, 담당관의 사무는 규칙으로 정하고 있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관 실·과		조직예산과
입 안 자	실·과장 직위·성명	조직예산과장 구중필
	담당·팀장 직위·성명	조직법무담당 송호식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교육행정주사 오성근(044-320-1511)